

## 2019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(60세 이상)

### □ 지원질환

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)

### □ 접수 대상 및 기준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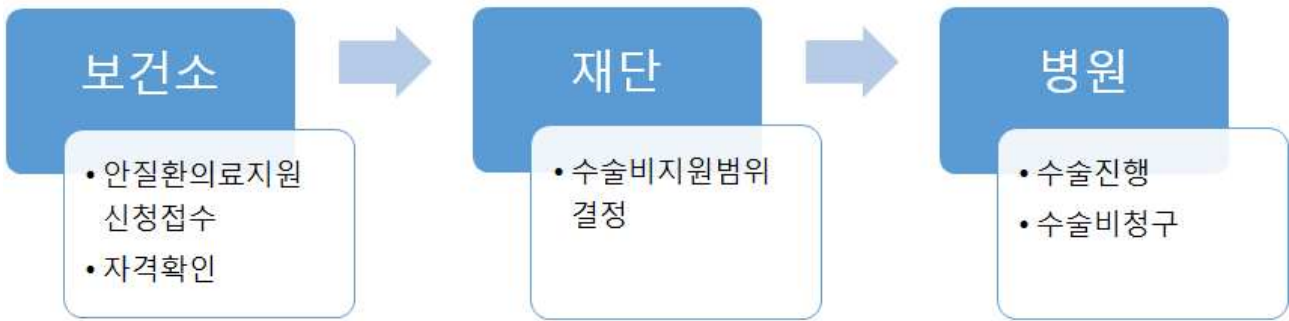
### □ 신청방법

-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,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
  - ②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담당 공무원
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### □ 구비 서류

-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【서식 1호】 1부  
※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,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
-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【서식 2호】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1부
-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(수술명 기재)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## □ 지원 절차 및 방법



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0일 소요(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)

②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

※ **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**

※ **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**

## □ 지원범위

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(혈액·소변·심전도·눈초음파 등)

② 아바스틴 · 루센티스 · 아일리아 ·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1회, 주사 2회

※ 단,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, 루센티스 · 아일리아 ·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

③ 후발성백내장 · 망막 ·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: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

## □ 지원제외

①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

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

③ 통원진료비

④ 특수렌즈(난시교정·다초점·조절성 인공수정체 등)

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한 의료비

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

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

예)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

##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

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 | 접수일  | 처리기간             | 10일 |
| 신청인   | 성명   | 대상자와의 관계         |     |
|       | 연락처 (자택)   | (휴대폰)            |     |
| 지원대상자 | 성명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|     |
|       | 주소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|     |
|       | 진단명  | 수술희망병원<br>(전화번호) |     |
| 구 분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급여1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급여2종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 이외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|                  |     |
| 비 고   |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<br>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|                  |     |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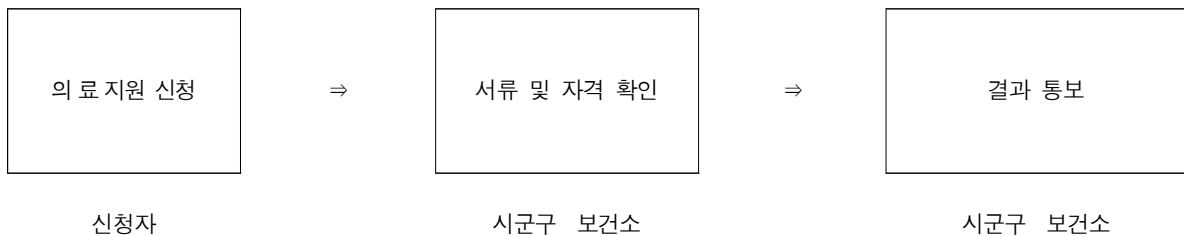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보건소장**    귀하

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안과 진료소견서(또는 진단서) 1부<br>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| 모든 서류는<br>1개월 이내 발급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
### 처리 절차

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· 제공 동의서

동의자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, 검진,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며,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제공 항목

- 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건강상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
- 관련사항 :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, 안과 진료소견서(또는 진단서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목적

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·제공합니다.

-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
-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
-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·통계·홍보
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
-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

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

- 보건복지부, 보건소, 한국실명예방재단, 사회보장정보원, 수술시행 의료기관
-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

※ 상기 내용과 관련,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.

상기명 본인은 “개인정보보호법”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인 : (서명)

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:

\*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, 사유 기재

\_\_\_\_\_

## 개인정보 보호법

[타법개정 2017. 7. 26 법률 제14839호]

###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###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2.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 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 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 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